

<국민을 위한 개헌> 정의당 개헌 시안

- 정의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

1차 초안 완성일 : 2018년 1월 28일(일)

* 이 안은 정의당의 개헌안 초안이며 이후 수정, 보완될 수 있습니다.

1. 전문·총강·기본권 분야

1)전문

2)총강

- 국민주권 원리, 지방분권 관련
- 영토조항
- 평화통일

3) 기본권 주체 및 국민주권 실현

- 기본권 주체
- 국민주권 실현 위한 직접민주제 강화

4)평등권

- 평등권의 차별금지 사유 추가
- 영장신청 주체 개정
- 성평등 권리

5) 아동, 노인, 장애인 권리 신설

- 아동의 권리
- 노인의 권리
- 장애를 가진 사람의 권리

6) 노동권

- 노동권 강화 및 호칭의 정상화
- 일할 권리
- 노동3권

7) 새로운 권리

- 생명권의 신설
- 위험으로부터의 안전권의 신설
- 건강권의 신설
- 정보기본권의 신설
- 소비자의 권리 신설
- 환경권 강화 및 지속가능성 원칙 명시

8) 사상 등

- 망명권 신설
- 사상의 자유
- 표현의 자유
- 저항권
- 양심에 따른 병역/집총거부권 신설

9) 사회권

- 교육받을 권리
- 사회보장권 강화
- 주거권
- 문화권 신설

10) 농민과 먹거리 기본권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등

- 식량주권 및 지속 가능한 농업

2. 경제·재정 분야

- 경제민주화 강화
- 자연자원을 공유자원으로 규정
- 토지공개념
- 친환경적 농업과 어업의 육성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
- 대외무역의 원칙으로 호혜성·공정성을 명시
- 과학기술 발전의 성과에 대한 국가의 의무 명시
- 감사원의 독립기구화
- 감사원의 구성

3. 지방분권 분야

- 지방분권 국가 선언 신설
- 지방자치권 연원과 사무배분 원칙의 신설
- 입법권의 배분
- 행정권 배분
- 지방정부의 재정권 신설
- 지방정부의 기관

4. 정당·선거 분야

- 공천의 민주성 원칙과 정당 설립의 자유 확대
- 정당 국고보조금 규정의 보완
- 국회 양원제 도입 여부

- 국회의원 정수 조정
- 비례성의 강화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독일식) 선
거제도 도입 여부
- 대통령 선거에 관한 사항
- ‘선거관리’ 관련 조항
- 남녀동수제
- 선거연령의 하향 조정 여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하향 및 헌법 명시 여부

5. 사법부 분야

- 사법권의 귀속
- 대법원의 구성 및 사법행정의 지방분권
- 사법행정권의 분리·독립
- 법관의 신분 : 임기·정년·징계
- 전관예우금지의 헌법적 명시
- 군사재판제도 개선
- 헌법재판소의 구성
- 예비재판관제도의 도입
-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
-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신분

전문·총강·기본권 분야

1. 전문

□ 개헌안 내용: 전문 [현행 전문; 조문시안 전문]

현행	정의당 (안)	참고(자문위 안)
<p>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p>	<p>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u>4·19혁명, 5·18 광주 민주화운동, 6·10항쟁, 촛불시민혁명의 민주</u>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u>법치주의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의 실현을 기본 사명으로 삼아, 인류애와 생명 존중으로 평화와 상생을 추구하고, 자</u> 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u>노동이 존중되는 사회</u></p>	<p>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u>4·19혁명과 6.10항쟁</u> 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u>법치주의에 터 잡은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의 실현을 기본 사명으로 삼아, 인</u> 류애와 <u>생명 존중으로 평화와 공존을 추구하고,</u>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u>사회정의와 자</u> 치·분권을 실현하고, <u>기회균등과 연대의 원</u></p>

<p>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p>	<p><u>정의를 실현하며, 기회균등과 연대의 원리로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 안으로는 국민의 생활을 균등하게 향상시키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하고, 모든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변화 속에 우리와 미래세대의 자유와 안전과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며,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개정한다.</u></p>	<p><u>리를 사회생활에서 실천하고, 지구생태계와 자연환경의 보호에 힘쓰며, 안으로는 국민의 생활을 균등하게 향상시키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하고, 모든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우리와 미래세대의 자유와 안전과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u></p>
--	--	---

2. 총강

□ 개헌안 내용: 국민주권 원리, 지방분권 관련 [현행 제 1 조; 조문시안 제 1 조]

현행	정의당 (안)	참고(자문위 안)
第1條 ①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② 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u>나오며, 국민을 위하여 행사된다.</u> ③ <u>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u>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u>나오며, 국민을 위하여 행사된다.</u> ③[기본권.총강분과 의견] <u>대한민국은 분권형 국가를 지향한다.</u> [지방분권분과 의견] <u>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u>

□ 개헌안 내용: 영토조항 [현행 제 3 조; 조문시안 제 3 조]

현행	정의당 (안)
第3條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u>영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포함하는 영토, 영해, 영공으로 한다.</u>

□ 개헌안 내용: 평화통일 [현행 제 4 조; 조문시안 제 4 조]

현행	정의당 (안)	참고(자문위 안)
<p>第4條 大韓民國은 統一을 指向하며, <u>自由民主的</u> 基本秩序에 입각한 平和的 統一政策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p>	<p>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u>민주적</u>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p>	<p>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u>민주적</u>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p>

3. 기본권 주체 및 국민주권 실현

□ 개헌안 내용: 기본권 주체 [현행 제 10 조; 조문시안 제 10 조]

현행	정의당 (안)
<p>第10條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追求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개인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義務를 진다.</p>	<p>제10조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p>

□ 개헌안 내용: 국민주권 실현 위한 직접민주제 강화[일반조항 신설 및 관련 조항 추가]

현행	정의당 (안)	참고(자문위 안)
<p><신설></p>	<p>제00조 ①모든 국민은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의 권리를 가진다. ②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의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p>	<p>제41조 ①모든 국민은 국민발안, 국민투표의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일정수 이상의 서명으로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그 사유를 적시하여 소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p>

4. 평등권

□ 개헌안 내용: 평등권의 차별금지 사유 추가 [현행 제 11 조; 조문시안 제 14 조]

현행	정의당 (안)	참고(자문위 안)
<p>第11條 ① 모든 國民은 法앞에 平等하다. 누구든지 性別·宗教 또는 社會的身分에 의하여 政治的·經濟的·社會的·文化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p> <p>② 社會的 特殊階級の 制度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形態로도 이를 創設할 수 없다.</p> <p>③ 勳章 등의 榮典은 이를 받은 者에게만 效力이 있고, 어떠한 特權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p>	<p>제14조 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p> <p>② 누구든지 <u>성별, 종교, 인종, 언어, 연령, 장애, 지역, 성적지향, 사회적 신분, 고용형태 등 어떠한 이유로도</u>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p> <p><현행 ②, ③항 삭제></p> <p>③국가는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 현존하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한다.</p>	<p>제14조 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p> <p>② 누구든지 <u>성별, 종교, 인종, 언어, 연령, 장애, 지역, 사회적 신분, 고용형태 등 어떠한 이유로도</u>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p> <p><현행 ②, ③항 삭제></p> <p>③국가는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 현존하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한다.</p>

□ 개헌안 내용 : 영장신청 주체 개정

현행	정의당 (안)
<p>제12조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p>	<p>제12조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p>

<p>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p>	
--	--

□ 개헌안 내용: 성평등 권리 [현행 제 32 조, 제 34 조, 제 36 조 ; 조문시안 제 15 조]

현행	정의당 (안)	참고(자문위 안)
<p>第32條 ④ 女子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雇傭·賃金및 勤勞條件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p> <p>第34條 ③ 國家는 女子의 福祉와 權益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第36條 ① 婚姻과 家族生活은 개인의 尊嚴과 兩性의 平等을 기초로 成立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國家는 이를 보장한다.</p> <p>② 國家는 母性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5조 ① <u>국가는 고용, 노동, 복지, 재정 등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성평등을 보장한다.</u></p> <p>② <u>국가는 선출직·임명직 공직 진출에 있어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촉진하고, 직업적·사회적 지위에 동등하게 접근할 기회를 보장한다.</u></p> <p>③ <u>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u></p> <p>④ <u>국가는 자녀의 출산·양육을 지원하여야 한다.</u></p>	<p>제15조 ① <u>국가는 고용, 노동, 복지, 재정 등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보장한다</u></p> <p>② <u>국가는 선출직·임명직 공직 진출에 있어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촉진하고, 직업적·사회적 지위에 동등하게 접근할 기회를 보장한다.</u></p> <p>③ <u>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u></p> <p>④ <u>국가는 자녀의 출산·양육을 지원하여야 한다.</u></p>

5. 아동, 노인, 장애인 권리 신설

□ 개헌안 내용: 아동의 권리 [현행 제 34 조 ; 조문시안 제 16 조]

현행	정의당 (안)
<p>第34條 ④ 國家는 老人과 靑少年의 福祉向上을 위한 政策을 실시할 義務를 진다.</p>	<p>제16조 ① 아동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아동과 관련한 모든 공적·사적 조치는 아동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p> <p>②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p> <p>③ 아동은 차별받지 아니하며, 부모와 가족 그리고 사회공동체 및 국가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p> <p>④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으며 적절한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p>

□ 개헌안 내용: 노인의 권리 [현행 제 34 조 ; 조문시안 제 17 조]

현행	정의당 (안)
<p>第34條 ④ 國家는 老人과 靑少年의 福祉向上을 위한 政策을 실시할 義務를 진다.</p>	<p>제17조 노인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와 사회적·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p>

□ 개헌안 내용: 장애를 가진 사람의 권리 [현행 제 34 조 ; 조문시안 제 18 조]

현행	정의당 (안)
<p>第34條 ⑤ <u>身體障礙者</u> 및 <u>疾病·老齡</u> 기타의 사유로 <u>生活能力</u>이 없는 <u>國民</u>은 <u>法律</u>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u>國家</u>의 보호를 받는다.</p>	<p>제18조 ① <u>장애를 가진 사람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와 사회참여의 권리를 가진다.</u> ② <u>국가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법률에 따라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고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필요한 보건의료 및 기타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u> ③ <u>국가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며 사회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u></p>

6. 노동권

□ 개헌안 내용: 노동권 강화 및 호칭의 정상화 [현행 전문, 제32조, 제33조; 조문시안 전문, 제35조, 제36조]

현행	정의당 (안)	참고(자문위 안)
<전문>“노동존중”“평등실현”이 명시되지 아니함.	<전문> <u>“노동존중” 명시</u> (구체적인 안은 전문 편 참조)	<전문> <u>“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의 실현을 기본 사명으로 삼아”</u>
第33條, 第33條에 <u>“勤勞”“勤勞者”</u> 로 기재됨.	제35조, 제36조에 현행“勤勞”“勤勞者”대신 “노동”“노동자”로 기재함.	제35조, 제36조에 현행“勤勞”“勤勞者”대신 “노동”“노동자”로 기재함.

□ 개헌안 내용: 일할 권리 [현행 제 32 조 ; 조문시안 제 35 조]

현행	정의당 (안)	참고(자문위 안)
第32條 ① <u>모든 국민은 勤勞의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社會的·經濟的 方法으로 勤勞者의 雇傭의 增進과 適正賃金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最低賃</u>	제35조 ①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고용의 증진에 노력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u>노동자를 고</u>	제35조 ①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고용의 증진에 노력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u>노동자를</u>

<p>金制를 施行하여야 한다.</p> <p>② <u>모든 국민은 勤勞의 義務를 진다. 國家는 勤勞의 義務의 내용과 조건을 民主主義原則에 따라 法律로 정한다.</u></p> <p>③ <u>勤勞條件의 基準은 人間의 尊嚴性을 보장하도록 法律로 정한다.</u></p> <p>④ <u>女子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雇傭·賃金 및 勤勞條件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u></p> <p>⑤ <u>年少者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u></p> <p>⑥ <u>國家有功者·傷痍軍警 및 戰歿軍警의 遺家族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優先적으로 勤勞의 機會를 부여받는다.</u></p>	<p><u>용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고용 하여야 한다.</u></p> <p>③ <u>국가는 적정하고 공정한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u>노동자 자신과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저임금제를 시행한다.</u>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u></p> <p>(현행 ②항 삭제)</p> <p>④ <u>노동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공동으로 결정하되, 그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u></p> <p>⑤ <u>노동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u></p> <p>(현행 ④항, ⑤항 다른 조항으로 이동)</p> <p>⑥ <u>국가유공자·상이군경과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노동의 기회를 부여받는다.</u></p> <p>⑦ <u>국가는 모든 사람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u></p>	<p><u>고용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고용 하여야 한다.</u></p> <p>③ <u>국가는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한다.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u></p> <p>(현행 ②항 삭제)</p> <p>④ <u>노동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공동으로 결정하되, 그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u></p> <p>⑤ <u>노동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u></p> <p>(현행 ④항, ⑤항 다른 조항으로 이동)</p> <p>⑥ <u>국가유공자·상이군경과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노동의 기회를 부여받는다.</u></p> <p>⑦ <u>국가는 모든 사람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u></p>
---	--	--

□ 개헌안 내용: 노동 3 권 [현행 제 33 조 ; 조문시안 제 36 조]

현행	정의당 (안)	참고(자문위 안)
<p>第33條 ① 勤勞者는 勤勞條件의 향상을 위하여 自主的인 團結權·團體交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p> <p>② 公務員인 勤勞者는 法律이 정하는 者에 한하여 團結權·團體交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p> <p>③ 法律이 정하는 主要防衛産業體에 종사하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36조 ①노동자는 자주적으로 단결할 자유를 가진다.</p> <p>②노동자는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과 대표를 통하여 <u>사업운영에 참여할 권리</u>를 가진다.</p> <p>③노동자는 <u>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및 노동조건 유지·개선을 위하여</u> 파업 기타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현역군인과 경찰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④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노동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의 분배에 <u>균점할 권리</u>가 있다.</p>	<p>제36조 ①노동자는 자주적으로 단결할 자유를 가진다.</p> <p>②노동자는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과 대표를 통하여 <u>사업운영에 참여할 권리</u>를 가진다.</p> <p>③노동자는 <u>경제적·직업적 이익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u> 파업 기타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현역군인과 경찰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p>

7. 새로운 권리

개헌안 내용: 생명권의 신설 [신설, 조문시안 제 11 조]

현행	정의당 (안)
<신설>	제11조 ①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진다. ② 사형은 폐지된다.

개헌안 내용: 위험으로부터의 안전권의 신설 [현행 제 34 조 6 항; 신설, 조문시안 제 13 조]

현행	정의당 (안)
제34조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① 모든 사람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재해 및 모든 형태의 폭력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개헌안 내용: 건강권의 신설 [현행 제 36 조; 조문시안 제 33 조]

현행	정의당 (안)	참고(자문위 안)
<p>제36조 ③ <u>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u></p>	<p>제33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p> <p>② <u>모든 국민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출산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적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u></p> <p>③ <u>모든 사람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사람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33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p> <p>② <u>모든 국민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출산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적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u></p> <p>(현행 제34조 ③, ④, ⑤항 삭제; 조문시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로 이동)</p> <p>③ <u>모든 국민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p> <p>④ 모든 국민은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p> <p>⑤ <u>모든 사람은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u></p> <p>(현행 제34조 ⑥항 삭제; 조문시안 제13조로 이동)</p>

□ 개헌안 내용: 정보기본권의 신설 [신설, 조문시안 제 28 조]

현행	정의당 (안)
<신설>	제28조 ① 모든 사람은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을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의 정보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 ③ 모든 사람은 정보문화향유권을 가진다. ④ 국가는 개인별·지역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독점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 및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개헌안 내용: 소비자의 권리 신설 [현행 제 124 조; 신설, 조문시안 38 조]

현행	정의당 (안)
제124조 국가는 <u>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u>	제38조 ① <u>모든 사람은 소비자의 권리를 가진다.</u> ② <u>국가는 소비자운동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한다.</u>

□ 개헌안 내용: 환경권 강화 및 지속가능성 원칙 명시 [현행 제 35 조; 조문시안 제 37 조, 신설]

현행	정의당 (안)
<p>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u>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u></p>	<p>제37조 ①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함께 누릴 권리를 가진다.</p> <p>② <u>모든 생명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u></p> <p>③ <u>국가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의 정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u></p> <p>④ <u>국가는 지구생태계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여야 한다.</u></p> <p><현행 ②항 삭제></p>

8. 사상 등

개헌안 내용: 망명권 [신설; 조문시안 제 24 조 제 1 항, 제 2 항]

현행	정의당 (안)
<신설>	제24조 ① 국가는 국제법과 법률에 따라 난민을 보호한다. ②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자는 망명권을 가진다.

개헌안 내용: 사상의 자유 [현행 제 19 조, 제 20 조; 조문시안 제 25 조, 제 26 조]

현행	정의당 (안)
第19條 모든 國民은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	제25조 모든 <u>사람</u> 은 사상 및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개헌안 내용: 표현의 자유 [현행 제 21 조; 조문시안 제 29 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제 30 조]

현행	정의당 (안)
<p>第21條 ① 모든 國民은 言論·出版의 自由와 集會·結社의 自由를 가진다.</p> <p>② 言論·出版에 대한 許可나 檢閲과 集會·結社에 대한 許可는 인정되지 아니한다.</p> <p>③ 通信·放送의 施設基準과 新聞의 機能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p> <p>④ 言論·出版은 他人의 名譽나 權利또는 公衆道德이나 社會倫理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言論·出版이 他人의 名譽나 權利를 침해한 때에는 被害者는 이에 대한 被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p>	<p>제29조 ①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금지된다.</p> <p>② 언론매체의 자유와 다원성, 다양성은 존중된다.</p> <p>③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배상 또는 정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p> <p>제30조 모든 국민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이에 대한 허가는 금지된다.</p>

□ 개헌안 내용: 저항권

현행	정의당 (안)	참고
<p>○ 헌법전문에 간접적으로 규정(“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p>	<p>제00조 모든 국민은 국가기관에 의한 헌법적 질서의 중대한 위반 및 그 불법적 폐지에 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에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p>	<p>독일 기본법 제23조a</p> <p>④ 모든 독일인은 이러한 질서의 폐지를 기도하는 자에 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불가능할 때는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p>

□ 개헌안 내용: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현행 없음; 조문시안 제 52 조 제 3 항]

현행	정의당 (안)	참고(자문위 안)
<신설>	제52조 ③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병역을 강제 받지 아니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	제52조 ③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징총병역을 강제 받지 아니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

9. 사회권

□ 개헌안 내용: 교육받을 권리 [현행 제31조; 조문시안 제34조]

현행	정의당 (안)	참고(자문위 안)
<p>第31條 ① 모든 國民은 能力에 따라 均등하게 教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p> <p>② 모든 國民은 그 보호하는 子女에게 적어도 初等教育과 法律이 정하는 教育을 받게 할 義務를 진다.</p> <p>③ 義務教育은 無償으로 한다.</p> <p>④ 教育의 自主性·專門性·政治的의 中立性 및 大學의 自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p> <p>⑤ 國家는 平生教育을 振興하여야 한다.</p> <p>⑥ 學校教育 및 平生教育을 포함한 教育制度와 그 운영, 教育財政 및 敎員의 地位에 관한 基本的인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p>	<p>제34조 ① 모든 사람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p> <p>② 모든 사람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u>초등교육과 중등교육 및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u> 받게 할 의무를 진다.</p> <p>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p> <p>④ 국가는 <u>교육과정의 질 제고 및 형평성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평생교육, 직업교육, 민주시민교육, 사회교육을</u> 진흥하여야 한다.</p> <p>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p> <p>⑥ 대학 자치는 보장된다.</p>	<p>제34조 ① 모든 사람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p> <p>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u>법률이 정하는 교육을</u> 받게 할 의무를 진다.</p> <p>③ <u>초등교육과 중등교육 및 법률이 정하는 교육</u>은 무상으로 한다.</p> <p>④ 국가는 <u>교육과정의 질 제고 및 형평성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평생교육, 직업교육, 민주시민교육, 사회교육을</u> 진흥하여야 한다.</p> <p>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p> <p>⑥ 대학 자치는 보장된다.</p>

□ 개헌안 내용: 사회보장권 강화 [현행 제 34 조; 조문시안 제 33 조 제 1 항, 제 2 항]

현행	정의당 (안)	참고(자문위 안)
<p>第34條 ① 모든 國民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가진다.</p> <p>② 國家는 社會保障·社會福祉의 增進에 노력할 義務를 진다.</p>	<p>제33조① 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p> <p>② 모든 국민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출산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적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p> <p>③ 법률이 정한 범위의 정주 외국인들에 대하여 국가는 법률에서 정하는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의료를 포함한 기초생활 유지를 보장하여야 한다.</p> <p>④ 노령·장애·아동 등 소득 및 생활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 대한 예산과 그 밖에 사회보장 예산 순으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다른 분야의 예산보다 우선편성하고, 국가와 모든 국민 및 정주 외국인은 부담능력에 따라 소요 재정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한다.</p> <p>⑤ 모든 사람은 사회보장제도 등에 관한 고지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p>	<p>제33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p> <p>② 모든 국민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출산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적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p>

□ 개헌안 내용: 주거권 [현행 제 35 조; 조문시안 제 33 조 제 4 항]

현행	정의당 (안)	참고(자문위 안)
第35條 ③ 國家는 住宅開發政策 등을 통하여 모든 國民이 快適한 住居生活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조 ①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u>안정적인</u>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법률에서 정한 <u>최소주거기준 이상</u> 에서의 주거생활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3조 ④ 모든 국민은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개헌안 내용: 문화권 [현행 없음 ; 조문시안 제 33 조 제 5 항]

현행	정의당 (안)	참고(자문위 안)
<신설>	제33조 ⑤ 모든 사람은 경제적 능력과 관계 없이 적절한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이들의 문화향유권과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33조 ⑤ 모든 사람은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신설)

10. 농민과 먹거리 기본권

□ 개헌안 내용: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먹거리 기본권리 등 [현행 제 34 조, 제 35 조, 제 36 조; 조문시안 제 33 조]

현행	정의당 (안)	참고
<신설>	⑥ 모든 국민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식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

□ 개헌안 내용: 식량주권 및 지속 가능한 농업

현행	정의당 (안)	참고(자문위 안)
<p>제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p> <p>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p> <p>제123조 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p>	<p>제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농민과 농촌의 생활상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p> <p>② 국가는 농업의 다원적,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식량주권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농업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제122조 ①·② (현행과 같음) [다수의견]</p> <p>제123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의 권익 신장을 보장한다. [다수의견]</p> <p>② 국가는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하고,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p>

<p><u>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③ 국가는 공정하고 상호의존적인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 및 유통체계를 촉진하고 농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소득과 최저가격을 보장하여야 한다.</p> <p>④ 국가는 농민들의 자주적인 식량생산과 공평한 분배를 촉진하고 농촌공동체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농민의 자조조직을 지원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p>	
------------------------------------	--	--

경제·재정 분야

□ 개헌안 내용: 경제민주화 강화

현행	정의당 (안)	참고(자문위 안)
<p>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p> <p>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p>	<p>제 000 조 ① <u>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u></p> <p>② <u>국가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며, 여러 경제주체의 참여, 상생 및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하여야 한다.</u></p> <p>③ <u>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는 사회정의 실현 및 국민경제 발전의 한도 내에서 보장된다.</u></p>	<p>제9장</p> <p>제119조 ① 현행 유지</p> <p>[다수의견]</p> <p>② <u>국가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며, 여러 경제주체의 참여, 상생 및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하여야 한다.</u></p> <p>[소수의견] (장용근 위원)</p> <p>② <u>국가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u></p>

		<p>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며, <u>경제주체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u></p>
--	--	---

□ 개헌안 내용: 자연자원을 공유자원으로 규정. 국토와 자원에 대한 국가의 보존의무 명시

현행	정의당 (안)	참고(자문위 안)
<p>제120조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p>	<p>제121조 ① <u>자연자원은 모든 국민의 공동 자산으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u> ②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u>해양자원·산림자원</u> 등과 수력·풍력 등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p>	<p>[다수의견] 제121조 ① <u>자연자원은 모든 국민의 공동 자산으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u> [다수의견] ②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u>해양자원·산림자원</u> 등과 수력·풍력 등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p>

□ 개헌안 내용: 토지공개념

현행	정의당 (안)	참고(자문위 안)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u>제120조 ①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보전을 도모하고, 토지 투기로 인한 경제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한다.</u>	[다수의견] <u>제120조 ①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보전을 도모하고, 토지 투기로 인한 경제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한다.</u>

□ 개헌안 내용: 친환경적 농업과 어업의 육성을 국가의 의무로 하고, 지역의 자연자원을 공유자원으로 명시함

현행	정의당 (안)
제123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제 조 ①국가는 <u>친환경적인 안전한</u>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u>지역공유자산을 유지, 발전시키며</u>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p>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p> <p>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p> <p>⑤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p>	<p>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p> <p>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p> <p>⑤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p>
---	---

□ 개헌안 내용: 대외무역의 원칙으로 호혜성, 공정성을 명시함

현행	정의당 (안)
<p>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p>	<p>제125조 국가는 <u>호혜적이고 공정한</u>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p>

□ 개헌안 내용: 과학기술 발전의 성과가 국민경제에 균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의 임무를 명시

현행	정의당 (안)	참고(자문위 안)
<p>제127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p> <p>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p> <p>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p>	<p>제127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그 성과가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p> <p>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p>	<p>[다수의견]</p> <p>제127조 ①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p>

□ 개헌안 내용 : 감사원의 독립기구화

현행	정의당 (안)
<p>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p>	<p>제97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감사원을 둔다. 다만, 직무 감찰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p>

	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감사원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	--------------------------------------

□ 개헌안 내용 : 감사원의 구성

현행	정의당 (안)	참고(자문위 안)
제98조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98조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9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위원은 <u>감사위원추천위원회</u> 의 추천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감사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u>호선</u> 한다. ④ 감사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⑤ <u>감사위원추천위원회</u> 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98조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9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위원은 법률이 정하는 독립적인 감사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전 항의 국회의 동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한다. ④ 감사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감사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⑤ 감사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지방분권 분야

개헌안 내용: 지방분권국가 선언 신설

현행	정의당 (안)
<신설>	제1조 ③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

개헌안 내용: 지방자치권 연원과 사무배분 원칙의 신설

현행	정의당 (안)
<신설>	제117조 ① 주민은 그 지방 사무에 대해 자치권을 가진다. 주민은 자치권을 직접 또는 지방정부의 기관을 통하여 행사한다.
제117조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② 지방정부의 종류는 종전에 의하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거쳐 법률로 정한다.
	③ 정부간 사무배분과 수행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른다.

□ 개헌안 내용: 입법권의 배분

현행	정의당 (안)	참고(자문위 안)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0조 입법권은 국민 또는 주민이 직접 행사하거나 그 대표기관인 국회와 지방의회가 행사한다. 지방정부의 입법권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40조 입법권은 국민 또는 주민이 직접 행사하거나 그 대표기관인 국회와 지방의회가 행사한다.

□ 개헌안 내용: 행정권 배분

현행	정의당 (안)	참고(자문위 안)
<신설>	제118조 ⑤ 중앙정부는 법률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정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지방정부에 위임하여 집행한다.	제118조 ⑤ 중앙정부는 법률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정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지방정부에 위임하여 집행한다.
	⑥ 지방정부는 당해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을 자치사무로 수행하고, 중앙정부 또는 다른 지방정부에서 위임한 사무를 수행한다.	⑥ 지방정부는 당해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을 자치사무로 수행하고, 중앙정부 또는 다른 지방정부에서 위임한 사무를 수행한다.

		⑦ 지방검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	--	--

□ 개헌안 내용: 지방정부의 재정권 신설

현행	정의당 (안)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119조 ① 지방정부는 자기책임 하에 자치사무를 수행하고, 그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한다.</p> <p>②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위임하는 정부에서 부담한다.</p> <p>③ 지방정부에게는 그 사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이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p> <p>④ 지방정부는 지방세의 종류와 세율 및 징수방법을 법률로 정할 수 있다.</p> <p>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지방정부 상호 간 연대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 재정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지방정부 의견을 청취한 후 법률로 정한다.</p> <p>⑥ 지방정부는 재정건전성의 원칙에 따라 수지균형을 이루도록 투명하게 재정을 운영하여야 한다.</p>

	⑦ 지방정부의 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	--------------------------------------

□ 개헌안 내용: 지방정부의 기관

현행	정의당 (안)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20조 ① 지방정부에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둔다. 다만, 지방정부의 법률로 주민총회를 입법기관으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정부의 입법기관과 집행기관의 조직·인사·권한·선거, 기관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정부의 법률로 정한다.

정당·선거 분야

□ 개헌안 내용: 공천의 민주성 원칙과 정당 설립의 자유 확대

현행 헌법	정의당 (안)
제8조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제8조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u>공직선거 후보 추천을 포함한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모든 정당은 모든 선거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u>

□ 개헌안 내용: 정당 국고보조금 규정의 보완

현행	정의당 (안)
제8조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u>정당은 자금의 출처와 사용, 재산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u>

개헌안 내용: 국회 양원제 도입 여부

현행	정의당 (안)
	현행 유지

개헌안 내용: 국회의원 정수 조정

현행	정의당 (안)
제41조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제41조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u>300인</u> 이상으로 한다.

□ 개헌안 내용: 비례성의 강화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도 도입 여부

현행	정의당 (안)
<p>제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p> <p>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p> <p>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p>	<p>제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u>자유</u>·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p> <p>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u>300인</u> 이상으로 한다.</p> <p>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u>법률로 정하되,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비례성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u></p>

□ 개헌안 내용: 대통령 선거에 관한 사항

현행	정의당 (안)
<p>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p> <p>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p> <p>③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p>	<p>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u>자유</u>·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p> <p><u>②~④항 삭제</u></p> <p>②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p>

<p>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p> <p>④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p> <p>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p>	
--	--

□ 개헌안 내용: ‘선거관리’ 관련 조항

현행	정의당 (안)
<p>제7장 선거관리</p> <p>제114조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p> <p>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p> <p>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p> <p>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p> <p>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 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p>	<p>제7장 선거위원회</p> <p>제114조 ① <u>선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u> 2. <u>국민투표에 관한 사무</u> 3. <u>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u> 4. <u>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 관리에 관한 사무</u> 5. <u>선거제도 및 선거구 획정에 관한 사무</u> 6. <u>그밖에 법률로 정하는 사무</u> <p>② <u>선거위원회는 중앙선거위원회와 각급 선거위원회로 조직되며, 중앙선거위원회는 각급 선거위원회를 통할, 관리한다.</u></p> <p>③ <u>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면은 헌법기관장의 임면절차와 동일적으로 한다.</u></p> <p>④ <u>중앙선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탄핵 또는 금고</u></p>

<p>있다.</p> <p>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p> <p>제115조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116조 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p> <p>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p>	<p>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p> <p>⑤ 중앙선거위원회와 각급 선거위원회 위원은 정치에 일절 관여할 수 없다.</p> <p>⑥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p> <p>제115조 ① 중앙선거위원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관 사무의 처리 및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p> <p>② 선거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p> <p>제116조 ①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후보자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p>
--	--

□ 개헌안 내용: 남녀동수제

현행	정의당 (안)
<신설>	제10조 법률은 공직 선거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

□ 개헌안 내용: 선거연령의 하향 조정 여부

현행	정의당 (안)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현행 유지

□ 개헌안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현행	정의당 (안)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u>선거위원회를</u>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u>9인으로</u> 구성하며, 대통령이 추천하고 국회가 선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개헌안 내용: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하향 및 헌법 명시 여부

현행	정의당 (안)
제67조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제67조 ④삭제

사법부 분야

□ 개헌안 내용 : 사법권의 귀속

현행	정의당 (안)	참고(자문위 안)
<p>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p> <p>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p> <p>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p>	<p>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p> <p>② 법원은 <u>최고심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u></p> <p>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p> <p>④ <u>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u></p>	<p>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다만,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p>

□ 개헌안 내용 : 대법원의 구성 및 사법행정의 지방분권

현행	정의당 (안)	참고(자문위 안)
<p>제102조 ①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p>	<p>제102조 ①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p>	<p>제102조 ①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p>

<p>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p> <p>③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p>	<p>②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포함한 <u>24인 이상의 대법관을 둔다.</u>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p> <p>③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및 <u>사법행정의 지역 배분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p>	<p>②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포함한 24인 이상의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p> <p>③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p> <p>[지방분권분과 의견] 제102조 ③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따로 정한다.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둔다.</p>
--	---	---

□ 개헌안 내용 : 사법행정권의 분리·독립

현행	정의당 (안)	참고(자문위 안)
<p>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p> <p>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p> <p>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p> <p>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p>	<p>제104조 ① 대법관은 <u>대법관추천위원회</u>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p> <p>② 대법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p> <p>④ 대법관추천위원회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p>	<p>제110조의2 ① 법관의 임용, 전보 내지 징계, 법원의 예산 및 사법정책 수립 기타 법률이 정하는 사법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법평의회를 둔다.</p> <p>② 사법평의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p> <p>③ 사법평의회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5분의</p>

<p>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p> <p>※ <법원조직법> 제9조(사법행정사무) ①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법원행정처) ②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訟務)·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67조(법원행정처장 등) ② 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법원의 사법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감독한다.</p>		<p>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는 8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 법률이 정하는 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④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p> <p>⑤ 위원은 법관을 겸직할 수 없고,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퇴임 후 대법관이 될 수 없다.</p> <p>⑥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p> <p>⑦ 사법평의회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p> <p>제104조의2 ① 대법관은 사법평의회가 재적위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p> <p>② 대법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호선한다.</p> <p>[지방분권분과 의견] 제104조 ④ 각급법원의 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주민이 선출한다.</p>
---	--	--

□ 개헌안 내용 : 법관의 신분 : 임기, 정년, 징계

현행	정의당 (안)	참고(자문위 안)
<p>제105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p> <p>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④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p> <p>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p> <p>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p>	<p>제105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p> <p>② 대법관 및 법관의 <u>정년</u>은 법률로 정한다.</p> <p>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u>징계</u>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u>해임·정직·감봉</u>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p> <p>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p>	<p>제104조의2</p> <p>③ 대법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p> <p>④ 대법관 및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p> <p>※ 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p> <p>※ 제110조의2 ① 법관의 임용, 전보, 징계 내지 법원의 예산 및 사법정책 수립 등 법률이 정하는 사법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법평의회를 둔다.</p>

□ 개헌안 내용 : 전관예우금지의 헌법적 명시

현행 헌법	정의당 (안)	참고(자문위 안)
<p><신설></p>	<p>제106조 ③ 퇴직 대법관 및 법관의 변호사 업무수행에 관하여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p>	<p>제106조 ③ 퇴직 대법관 및 법관의 변호사 업무수행에 관하여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p> <p>※ 제112조 ④ 퇴직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변호사 업무 등에 관하여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p> <p>[지방분권분과 의견] 제106조 ③ 퇴직한 법관은 자신이 임명되었던 법원이 처리하는 사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관여할 수 없다.</p> <p>④ 국민 또는 주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을 소환할 수 있다.</p>

□ 개헌안 내용 : 군사재판제도 개선

현행	정의당 (안)	참고(자문위 안)

<p>제110조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p> <p>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p> <p>③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p> <p>④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10조 ① 전시에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평상시에는 군사법원을 둘 수 없다.</p> <p>② 군사법원의 상소심은 각급법원 및 대법원에서 관할한다.</p> <p>③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p>	<p>제110조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p> <p>② 군사법원의 상소심은 각급법원 및 대법원에서 관할한다.</p> <p>③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p> <p>④ (삭제)</p>
---	---	---

□ 개헌안 내용 : 헌법재판소의 구성

현행	정의당 (안)	참고(자문위 안)
<p>제111조</p> <p>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p> <p>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p>	<p>제111조</p> <p>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u>국회가 선출</u>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p> <p>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재판관 중에서 <u>호선</u>한다.</p>	<p>제111조</p> <p>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가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p> <p>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재판관 중에서 호선한다.</p>

--	--	--

□ 개헌안 내용 : 예비재판관제도의 도입

현행	정의당 (안)
제113조 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3조 ③ <u>예비재판관제도</u> 등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개헌안 내용 :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

현행	정의당 (안)
제111조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1조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 개헌안 내용 :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신분

현행	정의당 (안)	참고(자문위 안)
<p>제112조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p> <p>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p>	<p>제112조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p> <p>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p> <p>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p> <p>④ 퇴직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변호사 업무 등에 관하여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p>	<p>제112조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9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p> <p>④ 퇴직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변호사 업무 등에 관하여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p>